

#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발표(공연예술)

## 1

## 추진 경과

□ 심의 대상사업 : 총 1,949건

□ 심의위원회 구성

○ 구성 및 운영

※ 심의위원회 구성, 심의진행 방식, 심의 사후관리 등 심의운영절차는 「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 운영 및 관리기준」에 따라 운영됨

- 「2025 서울문화재단 통합 심의위원풀」 내 분야별 전문성 및 성비, 활동분야 균형을 고려하여 3배수 심의위원 풀을 구성함

- 3배수 심의위원 풀을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심의위원을 확정하며, 섭외순위는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참관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

- 확정된 우선순위별 섭외를 진행하며 심의위원의 제척확인 및 공정심의, 청렴 서약서 작성을 강화하여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운영함

-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심의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심의 진행

○ 구성기준

- 심의그룹은 사업공고 시 고지된 분야별 세부 심의그룹에 따라 나뉘어져 진행됨

- 심의위원 수 구성(각 5명)

※ 세부분야를 구분하여 심의하고, 장르의 통합적 이해와 변별성 있는 지원을 위해

A, B, C트랙을 동일한 심의위원이 심의 진행

※ 연극의 경우, 심의그룹 내 신청건수가 500건 내외일 경우 심의그룹을 분리하여 심의

○ 심의분야 및 구성인원 : 총 11개 심의그룹, 55명

| 분야 | 심의그룹             | 심의위원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극 | A트랙              | 김성제, 석재원, 이경성, 이은경, 최승연 |
|    | B, C트랙           | 김요안, 김정아, 박병성, 배선애, 임도완 |
| 무용 | 현대무용             | 김명현, 박성혜, 안병순, 정재혁, 홍혜전 |
|    | 한국무용(창작)         | 김경애, 김승일, 윤명화, 이지현, 이희자 |
|    | 발레               | 김선희, 신은석, 정옥희, 최태지, 허명진 |
| 음악 | 기악               | 문진탁, 성기선, 이보연, 임기현, 임수연 |
|    | 성악               | 김상균, 오미선, 이경재, 이지영, 최승원 |
|    | 작곡발표, 기타 음악발표    | 강은구, 김학선, 김희정, 손혜리, 황덕호 |
| 전통 | 국악기악, 국악성악, 작곡발표 | 김성준, 송영숙, 송지원, 유은선, 이형환 |
|    | 연희               | 강신애, 권선경, 권태연, 서한우, 양근수 |
|    | 전통무용             | 김영희, 김진원, 문희철, 성재형, 이종숙 |

□ 심의지표

○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

| 심의기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트랙별 가중치 |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A트랙     | B트랙 | C트랙 |
| 25년도<br>계획 | 프로젝트의 우수성           | 25      | 30  | 30  |
|            |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| 30      | 25  | 20  |
|            | 예술계/관람자 대상 기대효과     | 15      | 15  | 20  |
| 기존 활동      | 예술활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     | 20      | 15  | 10  |
|            | 예술적 역량              | 10      | 15  | 20  |

2

심의결과

□ 최종 선정결과 : 총 260건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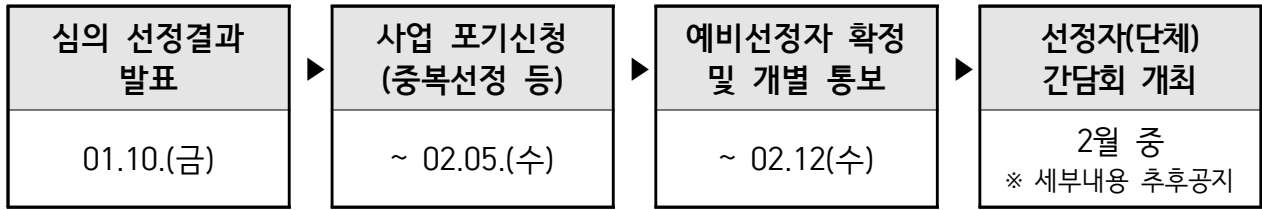
※ 분야별 선정자 명단, 심의총평은 붙임문서 참조

| 분야 |     | 접수건수   | 최종선정결과 |
|----|-----|--------|--------|
| 연극 | A트랙 | 202    | 20     |
|    | B트랙 | 289    | 25     |
|    | C트랙 | 99     | 14     |
| 무용 | A트랙 | 90     | 13     |
|    | B트랙 | 128    | 18     |
|    | C트랙 | 43     | 14     |
| 음악 | A트랙 | 259    | 34     |
|    | B트랙 | 383    | 49     |
|    | C트랙 | 133    | 17     |
| 전통 | A트랙 | 85     | 15     |
|    | B트랙 | 146    | 25     |
|    | C트랙 | 92     | 16     |
| 합계 |     | 1,949건 | 260건   |

## 3

## 향후 절차 및 일정 안내

## □ 향후 절차

□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선정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 
: 수행할 사업을 택1 후, 2025년 2월 5일(수)까지 재단으로 통보

-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(유사한)사업으로 당해연도의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문학번역원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국고, 문예진흥기금 및 지방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수행할 사업을 택1  
※ 동일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기관과 내용 확인절차 진행
- 통보기한 이후에라도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중복선정임이 확인될 경우, 해당사업은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진행

## □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사항 발생 사업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

- 지원신청 시 제출한 지원신청책임제 동의사항에 따라 선정자(단체)는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 지원신청 당시 선정자(단체)의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포기기한 내 재단으로 통보
- 기한 이후에라도 허위사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사업은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진행

## □ 지원사업 포기신청 기한 안내

- 결과 발표 후, 선정된 예술인/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2025년 2월 5일(수)까지 사업포기 신청을 할 수 있음
- 신청방법 : 담당자 유선 연락 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포기신청
-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 시 차기년도 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 
※ 단,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

## □ (필수참여)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자 간담회

- 일 정 : 2025년 2월 중(일시 추후 공지 예정)
- 내 용 : 지원금 운영·관리 절차 및 집행 요령 안내 등  
※ 선정자 대상 추후 개별 안내 예정

- **지원금 교부 : 2025년 2월 중순 ~ 11월 30일**
  -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교부됨
  - 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선정자의 경우, 전년도 사업 종료 및 정산·성과보고 확정 이후 올해 지원금이 교부 가능하므로 유의
- **향후 지원사업 수행 시 행정사항**
  - 선정 후에라도 위반행위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,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.(서울문화재단 타 사업 환류대상자 등)
  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현장평가 및 담당자 모니터링,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
- **A트랙 선정자 활동 증빙 자료 제출 : 지정된 기간 내 메일로 제출(선정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)**

## 기타사항

☐ 이의신청제도 운영

- 심의절차 또는 심의위원의 의결 과정 중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신청자(단체) 본인에 한하여 이의신청 진행
  - ※ 단, 이의신청 시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
- 이의신청 기간 : 2025년 1월 24일(금) 17:00까지
- 이의신청 대상
  - 심의절차 중 행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
  -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, 위계폭력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
  -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
  - ※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(범위)에 해당되지 않음
- 이의신청 절차

| 1단계              | 2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단계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이의신청<br>신청접수(외부) | <p>아래의 4가지 중 해당 여부 판단</p> <p>① 심의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②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(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 등)가 확인된 경우</p> <p>③ 심의위원 자격의 결격사유(제척사유 등)가 확인된 경우</p> <p>④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</p> <p>▶▶ 해당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 및 재단 관계팀(주무부서, 윤리경영실 등)의 종합판단에 따름</p> | <p>[미해당]<br/>조치 없음</p>           | <p>신청자<br/>결과공지</p> |
|                  | <p>▶▶ 해당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 및 재단 관계팀(주무부서, 윤리경영실 등)의 종합판단에 따름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해당]<br/>하단 '후속조치 방안'에 따름</p> | <p>결과공지</p>         |

※ 세부 조치방식은 사안에 따라 2단계 종합판단 시 조정될 수 있음

## ○ 후속조치 방안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심의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정 및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</li> <li>-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가능(전체 또는 해당 건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| <b>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</b><br>(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 등) | ②-1. 신청주체와 심의위원 간 쌍방이 모두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<br>: 해당 건 선정 취소, 재단이 정한 조치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정지(최대 10년) 등<br>②-2. 심의위원에 한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<br>: 해당 심의위원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점수 재집계 후, 선정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당 건에 대해 선정 여부 결정<br>※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예산 등을 활용하여 충당 |
| ③ | 심의위원 자격의 결격사유(제척사유 등)가 확인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단이 정한 조치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정지(최대 10년)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|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정 및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</li> <li>-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가능(전체 또는 해당 건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